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2월 2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27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2. 25.(금)	담당부서	재생에너지보급과
담당과장	이경수 과장(044-203-5380)	담 당 자	최준근 서기관(044-203-5381) 임은성 사무관(044-203-5384)

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

- 2021년 대비 24%(1,348억원) 증가한 총 6,958억원 지원 -

-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시설물 태양광 등 금융지원 확대 -

-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 확대를 위해 장기 저리 주민참여자금 지원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**2.28(월) 2022년「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」**과 **「녹색혁신금융사업(융자)」**(주민참여자금)을 공고하고, **3.7(월)부터 신청접수**를 받는다고 밝혔다.

○ **금융지원사업**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**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**와 관련 **제품을 생산하는 기업**을 대상으로 발전시설 **설치·공사비용과 제품 생산·운전자금**을 **융자 지원**하고,

○ **주민참여자금**은 **대규모 풍력·태양광 사업에 투자**하고자 하나, 자금 마련이 어려운 **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**으로 **투자금을 융자 지원**한다.

□ 신·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, **올해 지원규모**는 작년과 비교해 **약 24%(1,348억원) 증가**한 **6,958억원**에 달한다.

* 금융지원(억원): (`21) 5,240 → (`22) 6,540, 주민참여자금(억원): (`21) 370 → (`22) 418.2

□ (**금융지원사업**) **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**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**설치·공사비**(시설자금)와,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**설비 투자비용**(생산자금) 및 **운영비**(운전자금) 등을 **융자 지원**하며,

○ 시설자금의 경우,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송·변전 등 **계통 연계비용**도 올해부터 **지원 가능 내역에 추가**되었다.

□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**주요 지원대상**은 다음과 같다.

① **농어촌 지역 태양광 (3,570억원)**

○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**농·축산·어업인**이 지원대상이며, **개인당 500kW 미만**, 조합의 경우 **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**으로 **최대 300억원까지 지원**한다.

- 올해부터는 **주민주도형 발전사업 확산**을 위해 산업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**"햇빛두레 발전소"**에 **150억원을 우선 지원**하며,

- 그간 **개인 발전사업자**에만 **지원**하였던 **"영농형 태양광"**(농사+태양광 발전 병행)을 **조합에도 지원**하도록 하여 **대상을 확대**한다.

< **농어촌 지역 태양광 주요내용** >

❶ 지원 대상

- **농촌형 태양광** : 농·축산·어업인으로서, 본인 거주지의 읍·면·동 또는 인근 읍·면·동*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자

 * 창고, 축사, 잡종지 등에 설치(영농형은 발전과 경작을 병행)

- **농업용 저수지 태양광** : 공공 소유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또는 협동조합으로서, 해당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자

- **햇빛두레 발전소** :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마을태양광(햇빛두레 발전사업자)으로 지정된 후,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자

❷ 대출기간/이자율 : 5년 거치, 10년 분할상환 / 분기별 변동금리(1.75%)

❸ 융자지원 비율 : 개인 및 협동조합에 대해 총사업비의 90% 이내

② 산업시설 태양광 (1,000억원)

○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은 **산업단지 입주기업**(산단 태양광) 또는 **산업단지 외** 공장의 **유휴부지를 활용**(공장 태양광)하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**사업자를 대상**으로 **지원**한다.

○ 올해 지원대상은 전년과 동일하며, **본인 소유의 공장**에 **태양광 설비를 설치**하는 사업자와, **공장주**로부터 **공장지붕이나 부지** 등을 **임대받아 설치**하는 사업자(임대형 사업자)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.

< 산업시설 태양광 주요내용 >

❶ 지원대상

- **산업단지 태양광** :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자
- **공장 태양광** :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자

 * 발전사업자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지붕이나 부지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

❷ 대출기간/이자율 : 5년 거치, 10년 분할상환 / 분기별 변동금리(1.75%)

❸ 융자지원 비율 :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 90%, 중견기업 70%

③ 도심 태양광 (440억원)

○ 도심 태양광 사업은 주택, 상업건물, 교육시설 등 **기존 건축물** 또는 **시설물을 활용하여 설치**하는 사업에 지원되며, 예산은 전년 대비 **2.2배**(200억원→440억원) 확대되었다.

- 작년까지는 **건축물** 및 **부속시설물**(부설주차장, 경비실 등) 등 **건축물 대장**에 등재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만 지원하였으나,

- **올해부터는** 철도, 항만, 도로 방음벽, 자전거주차장 등 **시설물관리 대장**에 등재되어있는 **시설물***까지 **지원대상이 확대**된다.

 *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(알피에스, RPS) 설비확인 시 "기존시설물" 가중치가 부여되는 태양광 설비

< **도심 태양광 주요내용** >

❶ **지원대상** :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, 시설물*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자

* 공급인증서(REC) 발급대상 설비 기준에 충족한 시설물 한정

❷ **대출기간/이자율** : 5년 거치, 10년 분할상환 / 분기별 변동금리(1.75%)

❸ **융자지원 비율** :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 90%, 중견기업 70%

④ **풍력 및 기타 지원 사업 (1,500억원)**

○ 이외에도 **풍력, 연료전지 등** 비태양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**전년 대비 3배 수준**(300억원→1,000억원)**으로 확대**되었으며,

○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**중소기업의 생산·운전자금도 지원**(500억원)하여 **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**이다.

< 풍력 및 기타 지원사업 >

❶ **지원대상**

- 풍력·바이오·기타에너지원 : 에너지원별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
- 생산자금 : 신·재생에너지 전용 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
- 운전자금 : 신·재생에너지 전용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

❷ **이자율** : 분기별 변동금리(1.75%) ※ 대출기간은 공고문 참고

❸ **융자지원 비율** :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 90%, 중견기업 70%

□ (**주민참여자금**) 주민참여형 풍력·태양광 사업에 **투자하고자 하는 주민**에게는 관련 **투자금을 융자 지원**한다.

○ **주민참여자금**은 대규모 풍력(3MW*이상), 태양광(500kW**이상) 발전사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나, **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**들에게 투자금을 **20년간 장기·저금리**로 **최대 90%까지 지원**하는 사업으로서, *메가와트(MW), **킬로와즈(KW)

○ **대규모 주민참여·이익공유형 발전소가 증가**하는 추세에 따라, **지원규모**는 전년과 비교해 13% 증가된 **418.2억원으로 확대**되었다.

< **주민참여자금 주요내용** >

❶ **지원대상** : 태양광(500kW이상) 및 풍력 발전소(3MW이상)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(5인 이상), 어업권 등 피해보상 대상 주민 등

❷ **대출기간/이자율** : 20년 거치 일시상환 / 분기별 변동금리(1.75%)

❸ **지원액** : 총사업비의 4%와 발전소 자기자본의 20% 중 큰 감액의 90% 이내

□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「**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**」에 따른 재생에너지 **보급 목표를 충실히 이행**할 것이며,

○ 기존 건축물 등 **유휴부지를 활용**한 **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**하여 **환경훼손을 최소화**하면서 **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**하는 한편,

○ 대규모 풍력·태양광 프로젝트에 **인근 주민들이 참여**하고 **발전수익**을 **공유**하는 상생모델이 **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**하겠다고 밝혔다.

□ 자세한 사업내용은 **2.28(월)부터 산업부 홈페이지**(www.motie.go.kr)에서 확인 가능하며, 신청 희망인은 **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**(www.knrec.or.kr)를 통해 **3.7(월)부터 자금 소진시**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○ 햇빛두레 발전소는 2.28(월)부터 4.29(금)까지 **참여마을 선정 공고***를 실시하고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**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**(www.knrec.or.kr)에서 확인 가능하다.

*「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(2차)」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2022-5호)

[첨부1] (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-189호) 2022년 녹색혁신금융(융자) 지원사업 공고문
[첨부2] (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-190호)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문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민참여자금 관련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최준근 서기관(☎ 044-203-5381), 금융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임은성 사무관(☎ 044-203-53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